

장례식장 [] 영업 [] 변경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·영업신고 : 30일 ·변경신고 : 10일
장례식장	명칭		
	소재지		
	설치연월일		면적
	변경사항	변경사유 []시설 []영업자·관리인 []기타	
		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	
	영업자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/법인허가번호
		주소/법인 등 주소	자택/법인 등 전화
	관리인	성명	생년월일
주소		전화번호	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(변경)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영업신고(신규)	1.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.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. 정관 1부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4.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(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	변경신고	1.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1부 2.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건축물대장

처 리 절 차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신고 증명서 발급
					처리기관 : 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·구 (장사업무 담당부서)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